

인천지방법원 2023. 5. 12 선고 2021나7151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후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3. 3. 24.

판 결 선 고 2023. 5. 12.

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. 8. 23. 선고 2020가소58959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 C은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3. 13.부터 2023. 5. 12.까지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.
3.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.
4.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

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20. 4.경 인천 중구 D주택 신축사업 중 철근·콘크리트 공사(이하 ‘이 사건 공사’라 한다)를 수주 받고자 하였는데,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콘크리트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였다.

나. 이에 원고는 건설면허가 있는 기업을 인수하고자 피고 B에게 적당한 회사 소개를 부탁하였다.

다. 원고는 2020. 11. 3. 기업인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10,000,000원을 피고 C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이체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6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가 피고들 사이에는, 피고들이 원고를 위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건설면허가 있는 기업을 인수해주기로 하는 계약(이하 ‘이 사건 계약’이라 한다)이 체결되었다.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인수대상기업의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류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, 계약금을 유용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.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0,000,000원 상당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거나, 이 사건 계약 해지 내지 해제에 따라 위 10,000,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.

또는 선택적으로,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같이 원고를 위해 기업을 인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.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

10,000,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나. 피고 B의 주장 요지

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, 알고 지내던 원고의 부탁을 받아 피고 C을 통해 인수할 만한 회사를 소개해 준 것일 뿐이다. 또한 회사 인수와 관련해 원고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, 계약금도 피고 C이 전액 지급 받았을 뿐, 피고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.

3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

1) 갑 제7, 8호증 및 을 제6, 7,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, 피고들이 원고와 인수매도측 중개대리인인 F 사이에서 의사 전달 역할을 한 것은 인정된다.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3 내지 5호증, 을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, ① 평소 원고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피고 B이 원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 C을 원고에게 소개해 준 점, ② 갑 제3 내지 5호증 각 계약서를 보면 인수중개대리인으로 F, 매수중개대리인으로 G(주)이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들이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는 점, ③ 원고가 피고들이 원고를 위해 기업인수를 진행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또는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들은 원고의 부탁을 받아 인수 회사를 소개해 주거나 호의로 연락을 전달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,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.

2)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범위 등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나.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

1)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1, 2, 6, 11호증, 을 제6호증의 각 기재, E조합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, 즉, ① 피고 C은 2020. 11. 3. 당시 기업인수를 위한 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음에도 미리 원고로부터 기업인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10,000,000원을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 받은 점, ② 피고 C은 위 금원을 이체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20. 11. 4. 위 금원을 기업인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제3자들에게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(H에게 총 8,000,000원, I에게 1,000,000원 이체), ③ 이는 기업인수계약서에 계약금이 5,700,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나, ‘인수기업에 5,000,000원 및 중개대리인들의 컨설팅비로 5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’는 피고들 측 해명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, ④ 그럼에도 피고 C은 2020. 11. 27. 및 28. 마치 계약금은 전달되었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 것처럼 문자 내용을 작성한 후 피고 B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전달하도록 한 점, ⑤ 이후 피고 C과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J 인수 건도 성사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용도를 지정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.

2) 다만 피고 B의 경우,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1, 2, 7, 8, 12호증, 을 제1 내지 6,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, 즉, ① 원고가 이체한 이 사건 계약금은 전액 피고 C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이 경제적 대가를 얻은 것은 없어 보이는 점, ②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원고에게 전달해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였을 뿐 주도적인 역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, ③ 피고 B 역시 피고 C을 믿고 계약금 전달이나 회사인수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, 2020. 11. 26. 각종 서류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원고와의 연락을 지속하는 등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피고 B에 대한 사기죄 수사 결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그 밖에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.

다. 소결

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

다음 날인 2021. 3. 13.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. 5. 12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한편, 피고들이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거나, 피고 B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바,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원고의 피고 C에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차 승 환, 판사 봉 지 수, 판사 박봄빛누리